

에이스엑셀런트상해보험 사업방법서 별지

1. 보험의 종류 : 특종-상해/상해

2. 보험종목의 명칭 : 에이스엑셀런트상해보험

3. 보험의 목적

- 1) 피보험자의 신체
- 2)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각종 비용손해

4.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주기에 관한 사항

- 1) 보험기간 : 보험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. 그러나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장기계약 또는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
- 2) 보험료 납입주기 : 보험료는 보험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보험료 영수증과 상환하여 그 전액을 영수한다. 그러나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 영수할 수 있으며, 보험기간 별 보험료납입주기는 아래와 같다.

보험기간	보험료 납입주기
1년	일시납, 2회납, 4회납, 12회납
2년, 3년	일시납

5. 배당에 관한 사항 :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함

6. 보험료 차등적용에 관한 사항

「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용한다.

7. 기타

- 1) 자동갱신 특별약관 계약에 관한 사항
 회사는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정한 경우에 한하여 자동갱신을 거절할 수 있음.
- 2) 질병사망담보 특별약관 계약 운영에 관한 사항
 - ① 보험만기는 80세 이하로 함
 - ② 보험금액의 한도는 개인당 2억원 이내로 함
- 3) 15세미만자 등에 대한 판매금지에 관한 사항
 - ① 대상자 : 만 15세미만자,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
 - ② 판매금지 :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
- 4) 판매상품의 명칭에 관한 사항
 판매상품의 명칭은 “에이스엑셀런트상해보험< >”으로 함.

다만, < >부분은 자동갱신평약을 첨부한 계약에 한하여 <갱신평>이라는 문구를 추가함.
<예시>

- ① 자동갱신평약 미첨부 계약 : 에이스엑셀런트상해보험
- ② 자동갱신평약 첨부 계약 : 에이스엑셀런트상해보험<갱신평>

5) 판매제한에 관한 사항

2009년 10월 1일부터 신규 계약에 대해서는 판매하지 아니함

(2009년 8월 1일 이전 자동갱신평약 첨부 계약의 갱신평에 한하여 판매함)

6) 장애인전용보험전환 특별약관 운영에 관한 사항

(1) 이 특별약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보험계약에 한하여 부가할 수 있다.

- ① 「소득세법 제59조의4(특별세액공제) 제1항 제2호」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
- ②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가 「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(장애인의 범위) 제1항」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보험

(2) 기타

- ① 관련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변경된 법령을 따른다.
- ②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적용을 위해 알게 된 장애인 정보를 세액공제 목적으로만 활용하고, 다른 보험의 인수심사나 보험금 심사업무 및 요율산출 업무에는 활용하지 못한다.

Chubb. Insured.SM